



# 제 안 설 명

-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안

고 령 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의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로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책임성·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새로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그 역할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수행 함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분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제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3조에서는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에 관해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 제5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필요시 심의·자문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8조에서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읍·면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의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일

주민복지과장 박 현 자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주민복지과장)
제 출 연 월 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로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위한 조례 일부 개정함.

## 2. 주요 개정이유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군수의책무(안 제5조)
-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처우개선위원회(안 제5조2)
- 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현행화(안 제9조제2항 삭제)

## 3. 개정안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등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4.11.19. ~ 2024.12. 9. (의견제출 없음)
- 다. 예산 관련 사항 : 해당없음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없음
- 바. 기타 관련 사항 : 해당없음

##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8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다른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사회복지사업”이란 「<u>사회복지사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사회복지기관”이란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p> <p>3. “사회복지사 등”이란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5조(군수의 책무) ①·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 -----.</p> <p>1. -----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제1호----- ----- ----- ----- -----.</p> <p>2. -----이란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 -----.</p> <p>3. ----- 법 제2조----- ----- ----- ----- -----.</p> <p>제5조(군수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u></p>

<신 설>

제9조(실태조사)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8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며.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부칙** <제12935호, 2014. 12.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② 생략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주민복지과장)
제 출 연 월 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 1. 개정이유

-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수행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및 팀명 변경으로 조례 일부 개정함.

## 2. 주요 개정이유

-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안 제3조)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안 제5조)
- 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안 제8조)
-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안 제14조)

## 3. 개정안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4.11.19. ~ 2024.12. 9. (의견제출 없음)
- 다. 예산 관련 사항 : 해당 없음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바. 기타 관련 사항 : 해당 없음

##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문기구**”를 “**자문기구로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5조제2항 후단 중 “**위원장 중 1인을 포함 할 수 있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  
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제3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으며, 다음 대표협의체 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제8조제3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읍면  
복지행정담당자**”를 “**읍·면 맞춤형복지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문위원**”을 “**읍·면장**”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사업을 자문한다**”를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한다**”로 한다.

③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  
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사회복지보장증진 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정기탁사업

제14조제2항제1호 중 “대표협의체”를 “대표·실무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무협의체”를 “실무분과”로, “4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무분과”를 “읍면협의체”로 한다.

제21조 중 “사항은 규칙으로”를 “규칙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u>자문기구</u>를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1. ~ 6. (생략)</p> <p><u>&lt;신설&gt;</u></p> <p>7.·8. (생략)</p>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p>	<p>제2조(정의) ----- -----.</p> <p>1. ----- ----- ----- <u>자문기구로 “대표협의체”</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u>」 제5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p> <p>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민복지과장·보건소장 및 실무  
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성  
하기 위하여 읍면 협의체 위원  
장 중 1인을 포함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② (생략)

③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  
·면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  
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를 둘 수 있다. 단, 간사는 읍면  
복지행정담당자로 한다.

⑤ (생략)

-----  
-----  
-----  
----- 위원  
장을 포함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대표협의체의 원활하고 신속  
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협의  
체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제3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으  
며, 다음 대표협의체 회의에 관  
련 내용을 보고한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당  
연직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  
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  
-----  
----- 읍·  
면 맞춤형복지팀장으--.

⑤ (현행과 같음)



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규칙은 대표협의  
체 의결을 거쳐 -----  
-----.

#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주민복지과	
연 락 처	(054) 950 - 6173